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상디자인 제한 규정 완화〉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8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디자인 보호대상인 ‘화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의2)	3
2.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소멸시효 설정 등 (안 제113조제2항 및 제4항)	9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9.
3. 회부연월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및 기능성 있는 일부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지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

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 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
- 다.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금지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3조제4항).
- 라.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간으로 함(안 제115조제1항단서).

Ⅲ. 검토의견

1. 디자인 보호대상인 ‘화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의2)

개정안은 ‘화상’의 용어 정의에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2의2. ----- -----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제1호¹⁾)하고 있어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존재가 전제

1)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야 함.²⁾

그런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³⁾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어 일반적인 물품 개념보다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음.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류는 현행법 제40조제2항⁴⁾에 근거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⁵⁾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에서 ‘기업의 브랜드로서의 디자인’으로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자인이 산업적 가치를 더해가고 있음.⁶⁾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모양과 무

2) 산업상 유용한 미적 창작물에 해당하여 넓은 의미에서 디자인에 해당하여도 물품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함(「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16권제1호(2021.3.), 안원모).

3) 사전적 의미에서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有體物)를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고).

4)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32류(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

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 2022.9., 주관연구기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늑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⁷⁾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2021년도에 ‘화상(畫像)⁸⁾’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나,⁹⁾ 여전히 기능성 있는 디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의류·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기능성이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있는 화상에만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디자인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최근 메타버스 등의 영향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제품을 한정하지 않고 모양과 무늬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 디자인 산업계에서도 그 중요성을 기존의 제품디자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래픽 심벌’ 등을 포함하여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디자인법 개정안이 제18대, 제19대 및 제21대에 발의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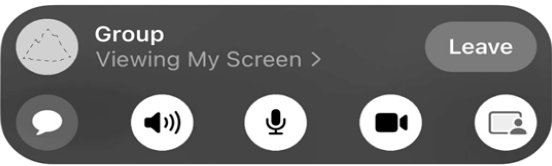
8)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연도별 화상디자인 출원 현황

연도	2022	2023	2024
전체출원(A)	60,689	59,316	59,940
화상디자인 출원건수(B)	321	369	348
화상디자인 출원 비율(B/A)	0.53%	0.62%	0.58%

[표 2] 개정안에 따른 화상 범위(예시)

현행법상 화상	개정안에 따른 화상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있는 화상만 보호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없는 디자인까지 확대하여 보호
	
	디지털 의류
	
	디지털 신발
	
	디지털 가방
	
	디지털 모자

특히 산업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디자인의 개념이 변화해 오고 있으며,¹⁰⁾ 현행법상 물품성 요건에 한정된 디자인 개념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디자인 보호 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경우 디자인 활용 측면에서 제3자의 자유 이용 영역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¹⁾

10)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구 「의장법」 제정 당시 전통적인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고 최근까지 그러한 큰 틀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디자인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어 2000년 이후 물품의 부분디자인(2001년), 글자체 디자인(2004년), 화상디자인(2021년) 등으로 확대하여 왔음.

11)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출현과 그 보호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물품을 떠난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라는 입법시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간 생략) 특히 물품성 완화 내지 예외의 추가에 따른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와 공중의 자유이용 대상 자체의 축소는 결과가 가져오는 디자인 자유이용영역의 축소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도형저작물로 ‘화상’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화상’을 「디자인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영역이 중첩·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러한 중첩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저작권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권리공백을 디자인권으로 보완 가능하고, 디자인권은 출원으로 등록을 받고 나면 권리가 확정되므로 보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고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보다 강한 보호가 가능하며,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요건과 효력이 상이하므로 권리자는 이를 선택하여 적합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임.¹²⁾¹³⁾

참고로, ‘그래픽 심벌¹⁴⁾’ 등을 포함하여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8대, 제19대 및 제21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을 고려한 입법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향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2021. 6. 16., 차상욱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

12) 참고자료: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13)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만이 권리로 인정되어 보호되고, 침해 여부 판단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저작권과 다르므로,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성격이 다른 권리임

14) 여기서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이란 그림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호나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도안, 캐릭터, 변형된 정도에 따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글자배열, 아이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래픽 심벌은 여러 가지 물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표현한다거나, 책의 표지에 심벌을 인쇄한다거나, 벽지의 문양에 적용한다거나, 가구의 표현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7. 7.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8811호)에 대한 검토보고서(2011.11월, 지식경제위원회) 참고).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표 3]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그래픽 심벌 포함) 관련 개정안 입법경과

구분	법률명	대표발의(발의일)	개정안 내용	비고
제18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2010.7.7.)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의 범위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 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 하는 것”을 포함	임기만 료폐기
제19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2014.9.26.)		”
제21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023.3.28.)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 포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¹⁵⁾의 경우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그래
픽·기호·로고를 포함하여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개정안과
동일한 수준), 미국, 일본 등은 제한적으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음.

[표 4] 화상디자인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구분	유무	주요 내용
EU	○	-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제품은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형태 모두를 포함하며, 제품의 범위에 <u>그래픽, 기호, 로고, 표면패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u> 등을 포함 하여 폭넓게 보호
미국	△	-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니터,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구 현되는 아이콘(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록가능 (심사기준 1504.01(a))
일본	△	- 조작용·기능발휘용 화상만 제한적으로 보호가 가능
중국	△	- 물품의 부분으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

자료: 특허청

15) [EU 개정디자인법] (제3조) 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2) '제품'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품을 의미하며, 물리적 물체
에 구현되어 있는지 또는 비물리적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

(a) 패키징, 한 벌의 물품, 내부 또는 외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의 공간적 배열, 복합제품
으로 조립하기 위한 부품,

(b) 그래픽 또는 기호, 로고, 표면패턴, 글자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2.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소멸시효 설정 등(안 제113조제2항 및 제4항)

개정안은 ‘화상의 실시행위’ 침해 주장 시 침해금지 청구 전에 서면 경고하도록 하고(안 제113조제2항),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4항 및 제115조 후단).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생략)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u>청구한</u>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 ---- <u>청구하거나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u>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경고 또는 예방을 청구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② ~ ⑧ (생략)

부 칙

<신설>

할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
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 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디자
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디자인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
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
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
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조(화상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
해에 대한 금지·예방·손해배상청
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화상인 디자인
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
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대해서는 제113
조제4항 및 제115조제1항 후단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디자인 보호대상을 화상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화상디자인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 침해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함.

그런데 화상디자인의 경우 가상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행사가 남용될 경우 제3자의 자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화상디자인의 범위를 확대·보호하면서도 침해금지 청구 전에 ‘화상의 실시행위’ 침해 주장에 대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멸시효를 단축함으로써 권리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서면경고 관련

현행법 제113조제2항에서는 비밀디자인의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⁶⁾ 이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디자인의 특성상 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16) 동 규정은 비밀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밀 청구된 기간에는 디자인공보에 디자인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디자인권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청구 전에 서면 경고하도록 한 것임.

개정안은 ‘화상의 실시’에 대하여도 비밀디자인 실시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권 행사 전에 서면경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쉽게 복제가 가능한 화상디자인의 실시로 인한 다수의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13조제2항 중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이라는 표현은 “침해를 주장하는”이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과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디자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¹⁷⁾

2) 침해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관련

현행 「디자인법」은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멸시효¹⁸⁾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됨.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¹⁹⁾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17)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과 같이 수정할 수 있음.

18)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

19)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되며,²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됨.²¹⁾

[표 6] 소멸시효 관련 규정

민법	디자인보호법	
	현행	개정안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제162조)	-	(화상디자인)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이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최초의 실시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안 제113조제4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	-	(화상디자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이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최초의 실시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안 제115조제1항 후단)

그런데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복제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화상디자인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수의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화상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3자의 자유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상디자인 침해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

20)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1)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등을 일반적인 권리침해 금지의 소멸시효보다 단축하려는 것임.

다만,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할 경우 다른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비교하여 보호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현재 보호 대상인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있는 화상디자인’ 권리자에게는 불합리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같이 화상디자인의 침해금지 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단축하는 경우 조문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안 제113조제4항 중 ‘경고’는 제2항의 서면경고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²²⁾

3)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관련

안 부칙 제2조²³⁾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적용에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화상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중

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과 같이 수정할 수 있음.

23) 부칙

제2조(화상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화상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대해서는 제113조제4항 및 제1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화상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되면서 소멸시효를 단축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단축된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⁴⁾

문 의 처

02)6788-5468

24)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화상디자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

참고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구분		디자인권 (Design Right)	저작권 (Copyright)
보호목적		○ 디자인의 창작 장려 ⇒ 산업발전에 기여	○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리 보호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문학, 음악, 미술 등) ※ 디자인창작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
성립 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Novelty) ○ 창작 비용이성(Creativity)	○ 독창성(Originality)
권리발생		○ 방식주의(심사 후 등록) ○ 등록 ⇒ 권리발생	○ 무방식주의(창작순간 자동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력, 추정력
권리 내용	인격권	○ 인격권(人格權) 불인정	○ 인격권 인정(양도 불가능)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 절대적 독점배타적인 실시권 ○ 속지주의	○ 모방금지권, 상대적 배타권 ○ 국제주의(베른협약)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70년 ※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인신전속
타법 등과의 권리조정		○ 이용·저촉관계 ※ 저작물을 이용한 디자인권을 실시하려면 저작자의 허락필요	○ 없음 ※ 응용미술저작물과의 권리조정 규정 없음
효력제한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등의 장치 기타의 물건 ·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공정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권리 구제수단		○ (민사구제) 업으로서의 사용요건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구제) 업으로서의 사용요건 ×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형사구제) 침해죄(반의사불벌죄)	○ (형사구제) 침해죄(친고죄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반친고죄 적용)
국제조약		· 파리조약 · 헤이그 협정 · 로카르노 협정	· 베른조약, 세계저작권 조약(UCC) · 제네바 음반 조약, 로마조약 · WIPO 저작권조약(WCT)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WTO/TRIPS, FTA	
중첩보호		-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판례상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보호 인정 ※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separability test)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	